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정책의 주요 내용

제	정	2021.05.20
1차 개정		2021.11.19
2차 개정		2022.06.17
3차 개정		2024.03.15
4차 개정		2024.08.20
5차 개정		2025.10.21
6차 개정		2026.02.12
7차 개정		2026.06.04

제3절 정보차단벽

제1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부문

제49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 등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 등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를 식별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 ③ 제1항제1호의 정보 중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요건 및 방법에 따른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52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⑤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20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⑥ 제1항제4호의 정보 중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 ⑦ 임직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부서는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판단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 ⑧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0조(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의 설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고유재산운용, 투자자재산운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1.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겸영·부수 업무
3.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 기타 교류차단 정보별 대상 부문의 구분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1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① 회사는 제50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별 또는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생산·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각 팀의 장으로 지정한다.

②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①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 통제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 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8조(준법감시인) 및 제14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는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에 준용한다.

⑥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이사회를 통한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팀으로 하며 준법감시인은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총괄책임자가 되고 컴플라이언스팀 소속 임직원은 정보교류차단 담당 조직의 임직원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컴플라이언스팀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필요시 컴플라이언스팀 소속 직원 외의 임직원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직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① 회사는 임원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대표이사

2.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팀 포함)

3. 기타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 승인을 득한 임원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관 사내 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

- 제54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5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50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3조제1항, 제56조(예외적 교류의 방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소속 부서의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또는 담당 조직)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유지·관리할 것
 7.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은 정보교류가 허용된 사항에 대한 사용 및 활용 내역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또는 담당 조직)에게 보고할 것
-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또는 담당 조직)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호의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직원이 승인한 경우는 반드시 담당 임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외적 정보 교류 사항에 대한 관리절차 등을 담은 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①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관리, 운용지원, 상품개발, 마케팅,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부서에서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관 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작성·관리 및 상시 감시 등

제58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 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별지 제1호]의 양식에 따라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월 1회)하여,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를 제한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인은 거래제한 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 양식에 따라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59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세부지침등을 마련하여 운용하거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를 하여야 한다.

- 1.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는 제외)
 - 2.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거래는 제외)
 - 3. 특정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4.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집합투자기구 유형별로 매매회전율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 5.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 한도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 ②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제9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2.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3.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4.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6.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다음의 대응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이해상충 유형	대응방안
임직원 ↔ 고객	임직원의 개인투자(상장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행위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시에만 거래 가능
임직원 ↔ 고객	재산상 편익제공 및 수령 행위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승인에 따른 업무처리
회사 ↔ 고객	펀드재산으로 회사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dumping)	회사가 거래 결정권을 가진 경우 매수 금지 (6개월 이내 매수 금지)
회사 ↔ 고객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펀드에서 매수하거나 펀드에서 보유한 자산을 회사가 매수하는 행위	금지
고객 ↔ 판매사	투자중개업자의 수익확대를 위해 펀드재산으로 지나치게 빈번하게 매매하는 행위 (churning)	매매회전율 분기별 점검
고객 ↔ 중개업자	펀드재산으로 펀드판매나 조사보고서의 대가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지불	분기별 투자중개업자 점검
고객 ↔ 고객	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컴플라이언스팀 승인에 따른 정보 제공 여부 결정
고객 ↔ 고객	집합투자기간의 자산거래	제한적 상황에서만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승인 시에 진행
회사 ↔ 고객	의결권의 행사	내부 자산운용기준에 따른 투자자의 이해에 반하는 행사 금지/의결권행사시 컴플라이언스팀 승인

④ 회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가총액 1천억원 미만인 종목에 대하여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으로 같은 날에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당일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의 매매가 완료되어 잔고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날이라도 고유재산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2.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의 동일종목에 대해 당일 중 매매방향이 달라서는 아니 된다. 단,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의 해지 및 신규설정, 편입비율조정을 위한 매매, 착오매매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여부를 확인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의 동일종목 공모주 투자시, 고유재산의 경우 상장일 즉시 매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유재산의 운용상 매도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4관 사외 정보교류 차단

제60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제3자에 대해 제55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경영지원, 전산,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제56조 및 제57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1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전송요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5관 기타

제63조(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

다.

1. 정보의 예외적 교류: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 수령자(또는 임시 편입 대상자)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정보 수령 일시 또는 편입 일시 및 해제 일시, 교류 정보의 주요 내용 등
 2.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기록·유지를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각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별 책임자 명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5년간 기록·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4조(임직원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3.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제65조 (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1. 제49조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50조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3. 제58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제59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공시가 필요한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